

한·미 FTA 농업부문 협상 평가와 과제

유레없는 완전개방, 농업·농촌 지킬 새로운 인력 진입 어려워 걱정
어설픈 '경쟁력 지상주의' 안돼, '보조·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 바뀌어야

농업부문의 피해를 각오하고 국익이 된다고 하여 지난해 2월부터 초고속으로 진행된 한·미FTA 협상은 금년 3월말 양국정부차원에서 일단 타결되어 양국의 국회 비준을 남겨 두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미국은 협상안을 놓고 수백 명의 각계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검토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국회에서 조차 제대로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해 주체들도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 평가한다하더라도 문제는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주요 협상내용

농업부문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한·미



윤석원
중남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FTA 협상에서는 1,531개 품목 중 37.6%인 576개 품목은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수입액 기준으로 약 55%에 달한다. 기타 품목도 10~15년 후엔 완전 철폐기로 하여 사상유례가 없는 완전개방이다. 농업부문 긴급수입제한조치(ASG)도 관세감축기간이 끝나면 몇 개 품목을 제외

하면 취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주요 품목의 양허내용을 보면 쌀 한 품목만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된 유일한 예외 품목이며 찌쌀, 배아미, 쌀빵은 1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토록 했다. 식용대두와 식용감자는 현행관세를 유지하는 대신 각각 무관세 쿼터 2만5천 톤과 3천 톤을 허용하고 매년 3%씩 증량토록 했다.

쇠고기는 민감한 6개 세 번인 도체와 이분도체(냉장 및 냉동), 부분육(냉장 및 냉

동)의 현행 관세 40%는 15년 후에 완전 철폐키로 했고 동 기간 중에만 ASG를 적용키로 했다. 육우는 현행관세 40%, 식용 설육(족·꼬리 등)의 현행관세 18%를, 쇠고기 가공품의 현행관세 72%를 15년 후에 완전 철폐키로 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제3국에서 수입한 생축을 도축한 경우에도 원산지를 인정하기로 하였고 미국은 특정 주에서 질병이 발생하면 그 주의 농산물만 수입 금지되고 타주의 농산물은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화 조건이 합의되었다.

돼지고기는 관세 22.5%를 10년 동안 철폐키로 하고 동 기간 중 ASG를 적용키로 했고, 닭고기는 통닭(18~20%), 냉동(가슴살, 날개)(20%)은 12년 후에 철폐키로 했다. 광우병 쇠고기는 5월 이후에 재논의키로 했고 육류는 제3국에서 수입한 생축을 도축한 경우에도 원산지를 인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특정 주에서 광우병이나 구제역이 발생하면 특정주의 축산물만 수입이 금지되고 다른 주의 축산물은 수입하도록 했으며 우리나라는 도 단위를 하나의 지역으로 했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탈지분유는 현행관세 176%를 유지하고 TRQ물량의 관세도 20~40%를 유지하며 연유는 현행관세 89%(TRQ 40%)를 유지하되 무관세 킬터 5천 톤을 제공하고 매년 3%씩 증량키로 했다. 혼합분유는 현행 관세 36%를 10년 후에 철폐키로 했고 조제분유도 현행관세 36~40%를 10년 후

에 철폐하되 무관세 킬터 700톤을 제공하고 매년 3%씩 증량키로 했다.

오렌지는 성출하기(9~2월)에는 현행관세 50%를 유지키로 하는 대신 무관세킬터 2,500톤을 제공하고 매년 3%씩 증량키로 했으며 비출하기(3~8월)에는 관세 30%에서 시작하여 7년 후에 완전 철폐키로 했다. 사과를 후지 계통 품종은 20년후에 완전 철폐키로 하고 ASG는 23년 후에 멈추기로 했다.

포도는 성출하기인 5월~10월15일까지는 17년 후에 완전 철폐키로 하고 비출하기(10.16~4월)에는 관세 24%에서 시작하여 5년 후에 완전 철폐키로 했다. 그밖에 대부분의 품목도 중장기적으로 모든 관세가 철폐된다.

고추는 핵심 6개 세 번(신선고추, 건조고추, 고춧가루 등)은 15년이면 관세 철폐이고 ASG는 18년간 적용된다. 마늘은 핵심 4개 세번(통마늘·간 마늘·일시저장·건조마늘)과 냉동마늘은 15년 후에 관세 철폐되고 초산조제·조제저장처리 마늘은 10년 만에 관세 철폐된다. 양파는 신선 및 건조 양파는 15년, 냉동양파는 12년, 초산조제 조제저장처리 양파는 10년이면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

평 가

이와 같이 금번 한·미FTA는 쌀 한 품목만 관세철폐 예외품목 일뿐 중장기적으로 모든 농축낙농 제품의 관세가 완전 철폐되기 때문에 우루과이 라운드(UR) 농업협상

이나 한·칠레FTA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충격적인 완전시장개방이다. 1995년 WTO의 출범은 쌀을 제외한 우리농업의 전면 개방을 의미하는 충격이다. 그러나 당 시부터 지금까지 관세는 부과되었으며 철폐는 아니었다.

미국은 미·호주FTA에서 342개 품목(19%)을 예외품목으로 했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미국은 유제품, 가금육, 계란, 마아가린 등 58개 품목(4.8%)을 캐나다로부터 받아 냈다. 캐나다는 35개 품목(3.4%)을 미국으로부터 관세철폐 예외로 했다.

캐나다와 멕시코 간에는 캐나다가 18개 품목(7.5%), 멕시코가 87개 품목(8.7%)을 예외로 했다. EU는 각종 FTA에서 20~40%의 품목을 관세철폐 예외품목을 확보하고 있다.

즉, EU·칠레 FTA의 경우 EU는 31.8%, EU·멕시코 FTA에서 EU는 35%의 품목을 관세철폐 예외품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체결된 세계 모든 국가 간 FTA에서 관세철폐 예외품목 없이 전 품목 관세 철폐한 예는 일부 도시국가와의 FTA를 제외하고는 한·미FTA가 유일하다.

안전성과 검역에 관한 내용을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5월 이후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이 나서서 광우병관련 쇠고기 수입재개를 약속하는 것은 국민의 보건과 건강에 관련된 사안으로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다. WTO규정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그밖에도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수입할 때 관련 규제완화 요구안을 제출할 자료를 완화하고 LMO끼리 교잡으로 개발된 후대교배종 작물은 추가 안전성 검사를 양기로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성과 관련된 사안을 너무 쉽게 처리하고 있다.

결국 한·미FTA 협상안은 중장기적으로 경제적 수치로 따질 수 없는 피해와 충격이 예상된다. 이러한 피해와 충격을 그나마 계량적으로 추정을 한다 해도 연구모형이나 자료, 시나리오의 설정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얼마든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피해규모의 계량적 산출 결과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일 뿐이며, 이러한 수치화된 계량모형의 결과를 전부인 것으로 판단하여 그 피해액만을 보상하면 될 것 이라는 안이한 판단을 할 것이 염려스럽다.

이러한 위기적 상황에서 특히 염려가 되는 것은 후계인력의 단절이다. 현재 농민 등은 별 다른 대안이 없어 갑자기 이농하거나 탈농하기가 쉽지 않다. 문제는 미래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켜 나갈 새로운 인력의 진입이 어렵다는 사실이 가장 염려스럽다.

대안

이상과 같이 현재 알려진 협상안만으로도 농업·농촌·농민에 미치는 중·장기적 파급효과는 경제적 피해액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므로 비준은 저지되어야 한다. 그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예외품목 하나 없이 중장기적으로 완벽하게 관세를 철폐하는 협상은 아무리 개방화 시대라 하더라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농업·농촌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쟁력 제고 노력은 필수이나 이것만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일부 엘리트 농민 사례를 들어 우리 농업이 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인 것처럼 과대포장하지 말아야 한다. 유기농업도 해야 하고 벤처농업도 해야 하며, 기능성 농산물도 개발해야 하고, 수출농업도 해야 한다.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이 모

든 것을 한다 해도 우리 농업·농촌·농민의 10%도 되지 않는다. 나머지 90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10만이 살아남아 경쟁에서 이기라는 것은 극소수의 엘리트 농민과 농업·농촌만 살아남으라는 것임에 다름 아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농업·농촌·농민을 말살하려는 획책이 될 수 있고 결국 지역 공동체가 붕괴되며 근본적으로 민족의 안위와 식량주권을 송두리째 내줄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

규모화와 전업농 중심의 정책을 중농중심의 다양한 경영체의 육성 정책으로 적극 전환해야 한다. 구조조정은 서서히 진행될 것이므로 서두를 일이 아니다. 생산부문에 서의 규모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산과 연계하여 유통·가공·마케팅 부문에서 규모화 되고 전문화된 연합체나 품목조합이 더욱 육성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농민은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에 전념하고 규모화 된 연합체나 품목조합이 마케팅·유통 부문을 전적으로 담당하여 브랜드를 육성도록 해야 한다.

경쟁력 제고는 필요하다. 그러나 어설픈 '경쟁력 지상주의' 만으로는 농업·농촌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선진국형의 농업·농촌정책 즉, 한편으로는 '경쟁력(품질, 안전성, 차별성)을 제고' 하면서 다른 한편에는 '보조·지원 정책'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야 한다. 농업·농촌은 민족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